

소상공인 긴급복구비 지원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의안 번호	제 100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3. 2. .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상정이유

집중호우('22.8.8.~8.17.)로 인해 피해 입은 관내 소상공인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

- 1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·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
- 2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, 제66조
- 3)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(재난지원금의 지원 등)
- 4) 「재해구호법」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
- 5)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」 제2조, 제5조, 제6조
- 6) 「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조례」 제9조(소상공인의 보호 등)

나. 사업 개요

- 1) 사업 기간: 2022. 8. ~ 12.
- 2) 지원 대상: 집중호우('22.8.8.~8.17.)로 침수 피해 입은 소상공인
- 3) 지원 내용: 1,088개소 지원(개소당 300만원)
- 4) 사업비 : 3,275,520천원
(국비 2,073,600천원/시비 480,960천원/ 구비 720,960천원)

다. 사업추진 결과

집중호우로 인해 피해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빠른 일상회복 및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자, 4분기 예비비 399,920천원을 사용하여 지원

3. 추진경과

- 가. 「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신고기간중 누락자 및 추가접수자 대상 지원계획」
: 2022. 9.
- 나. 「풍수해 피해 소상공인 지원금 추가 지원계획」 : 2022. 11.
- 다. 「침수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비비 배정 통보」
: 2022. 10. ~ 11.